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체계 개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6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8. 3.

(3) 회 부 일 : 2026. 8. 4.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관계 기관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할 제재수단이 없어 학대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 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2 신설, 제59조의11제4항 및 제88조의2제3항·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며,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2, 제59조의11제4항, 제88조의2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6).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9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의5. (생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신설>	3의6. 제5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6. (생략)	3의7. (현행 제3호의6과 같음)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1)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 이러한 신고의무자 제도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외부에서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장과 종사자 등 장애인과의 접촉 가능성 또는 보호·지원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직군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신고의무자로 추가되는 경우, 사업주는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²⁾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각 호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

<현행법상 신고의무자 현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2항 각호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³⁾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을 직접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조기 발견과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아동의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이와 관련, 2025년 제주도에서는 학대 피해로 쉼터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여학생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입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쉼터 종사자에게 알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음(더인디

□ 다만,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는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 (2025년 3월 27일). 학대예방 기관서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조사관 구속 '과장'. 더인디고.).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고 있지만,

신고의무자 조항에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여 현장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과의 중복 가능성과 신고의무 대상의 명확성 제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체계 개선

□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료 요청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기반과 종사자의 책임성 및 자료 확보 수단을 보완하는 등 기관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조사,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구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조사와 피해장애인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관장과 종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이들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피해장애인 보호와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지원 시 준용하려는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적절성,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

5) 개정안의 취지상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은 인력 지원·시설 지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비용 보조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개별 법령·사업 지침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음⁶⁾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피해장애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기능 및 업무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음.

6)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지침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과 신축·증개축·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운영비와 기능보강비의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업무 특성에 맞게 인건비·시설비·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수준·방법 등 세부 사항은 현행법 제59조의11제5항⁷⁾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 제공 의무자인 ‘관계 기관의 장’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⁸⁾

- 2026년 8월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기관 1개소와 지역기관 19개소 등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중앙 1개소 및 지역 15개소는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임(참고자료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국가기관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⁹⁾

-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한을 가진 주체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자료 요청 불응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적인 입법례는 확인하기 어려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¹⁰⁾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1제2항¹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¹²⁾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이와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설치·위탁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이행확보 수단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①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장과 종사자는 현행법상 이미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별도 명시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의 명확성 제고 효과와 현행 규정과의 중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②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것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③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 요청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행 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 성격, 권한과 책임의 범위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다만,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장과 종사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현행법상 이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나, 이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신고의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2026년 8월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기관장 / 종사자 수 (현원 기준)	수탁 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간 비영리기관)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1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간 비영리기관)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6	부산시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출연법인)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간 비영리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7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출연법인)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6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민간 비영리기관)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간 비영리기관)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6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 (민간 비영리기관)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3	세종장애인부모회 (민간 비영리기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1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간 비영리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10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간 비영리기관)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6	강원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간 비영리기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5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출연법인)

기관명	기관장 / 종사자 수 (현원 기준)	수탁 기관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5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출연법인)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7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민간 비영리기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6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민간 비영리기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10	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민간 비영리기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5	경북장애인부모회 (민간 비영리기관)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7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민간 비영리기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간 비영리기관)

주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국비 지원 기준상 정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6명,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5명이며, 정원을 초과하여 배치된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